



# 사생활 보호



## 2015-1093 신문윤리강령 위반

### 경향신문 발행인 송영승

#### 주문

경향신문 2015년 3월 20일자 29면 「1956년 스무 살 청년의 일기」 제목의 ‘강명관의 심심한 책 읽기’ 칼럼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경향신문의 위 적시 칼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달에 한두 번 보수동 헌책방 골목을 드나든다 하니, 무어 대단한 책이라도 잔뜩 사들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냥 산보 삼아 들르는 것이다. 쉬는 날 이따금 아내와 버스를 타고 남포동에서 내려 광복동 거리를 걷다가 영화관에서 영화도 보고, 국제시장 깡통골목 부평시장으로 돌아다니며 구경을 한다. 깡통시장에는 최근 야시장도 생겨서 밤에 볼 것이 더 많다.

어떤 날은 둘이 깡통골목을 거쳐 대청동까지 올라간다. 나는 길을 건너 보수동 책방골목으로 가고 아내는 깡통골목을 더 뒤지고 다닌다. 한 두어 시간 지난 뒤 다시 만난다. 나는 배낭을 지고 서점을 훑고 지나가는데 무슨 좋은 책이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책방골목은 그냥 헌책을 파는 곳일 뿐이지 일본 도쿄의 ‘간다(神田)거리’처럼 고서점이 밀집해 있는 그런 곳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 책도 사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고, 이따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책을 두어권 사거나, 아주 드물게 앞으로 공부에 참고가 될만한 책도 사기도 한다. 하지만 사는 책은 대부분 신간을 살 필요가 없는 소설 같은 것이다. 한번은 도스토예프스키 전집을 구하려 하니, 1974년에 나온 정음사판 전집이 있다. 시렁 높이가 있는 것을 내려 달라 해서 보니, 워낙 오래되어 낫설기 짝이 없다. 포기하고 말았다. 뭐, 이런 식이다. 그냥 걷느니 책방골목으로 다닐 뿐인 것이다.

수삼년 전 봄날 역시 아내와 헤어져 책방골목을 배회하다가 골목 중간쯤에

있는 제법 규모가 있는 책방에 들렀다. 자주 들리기는 하지만 별로 책을 산 기억은 없는 곳이다. 훑어보니 한쪽에 정리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책이 잔뜩 꽂혀 있다. 그중 책등이 벗겨진 볼품없는 책이 있었다. 뽑아 보니 어라? 책케이스까지 갖춘 책이다. 책케이스 앞면에는 찢레꽃이 그려져 있고 ‘文藝日記 1961’ (문예일기 1961)이란 제목이 붙어 있다. 책을 꺼내보니 하드커버다. 그 표지에는 ‘學園日記 4269 學園社’(학원일기 4269 학원사)라고 써 놓았다. 단기 4269년은 1956년이니 책케이스의 1961년과는 맞지 않다. ‘학원일기’를 ‘문예일기’ 케이스에 넣어둔 것이 틀림없었다. ‘학원일기’는 청소년을 독자층으로 삼았던 잡지 ‘학원’의 부록이었다. 당시 잡지사에서는 잡지를 더 팔 의도로 종종 부록을 끼워 팔곤 했는데, 일기장 역시 그런 것이었다. 일기장이 탐나서 잡지를 사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 ‘학원’은 고등학생들이 읽기 꼭 좋은 잡지였다. 학원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현상 시문 대회를 했는데, 그것을 거친 전국의 청소년 문사들이 뒤에 정식 문인이 되곤 하였다.

일기를 훑어보니 푸른 만년필로 단정하게 쓴 글씨다. 갑자기 구미가 당겼다. 주인을 불러 짐짓 아무것도 아닌 채하면서 이거 얼마요? 하고 물었더니, 주인은 내 얼굴을 한 번 보고, 책을 한 번 보고 망설망설하다가 2만원이라고 하였다. 자기로서는 밀쳐야 본전이라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아니, 무슨 이런 낡은 공책이 2만원이란 말이오? 하지만 얼굴에서 비상한 관심의 자취를 읽어낸 주인의 말투가 갑자기 단호해졌다. 세상에 한 권밖에 없는 책 아닙니까? 하는 수 없이 지갑을 열고, 2만원을 건넸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읽기 시작했다. 일기책 안쪽에 ‘張大成 專用’(장대성 전용)이라고 써 놓았다. 아마도 이 일기는 장대성이란 사람이 쓴 것일 터이다. 일기는 1956년 1월1일부터 10월16일까지의 것이다. 나이는 스무 살 정도다. 집은 경상남도 진주 근처의 시골이다. 일기가 시작될 때 장대성은 진주에서 하숙을 하면서 진주농림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1, 2월 대입 시험을 앞두고 마음을 풀이하며 공부를 하는 등 마는 등 하며, 진주 하숙집에 있다가 시골집으로 갔다가 하더니, 결국 3월4일 낙방 통보를 받는다. 다시 동아 대학교에 응시했지만, 또 낙방이다.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안에서 하는 제재소의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며 불안한 마음으로 입대(入隊)를 기다리다가 5월8일 동아대학교 야간부 편입시험에 합격한다. 당연히 5월19일 징집 연기를 하고 계속 제재소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학교를 다닌다. 따지고 보면 별로 신기할 것도 없는 일기다. 하지만 6·25전쟁 뒤 불안한 시대의 20대 초반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의 일상과 속내를 엿보기에 족하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친척과 친구들에 대한 친밀한 관계, 젊은 여성에 대한 치기 어린 애정, 일과 휴식 등을 그야말로 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장대성의 주 활동무대는 미화당백화점이고, 취미는 영화보기다. 하루치를 보자.

‘7월1일. 금일이 일요일인 동시에 7월의 첫날이어서 시민들은 오랜 장마에 시달렸던 몸을 비가 그치자 각 곳으로 산보하는 모습들이 눈에 띈다. 오전에는 남포(南浦)에서 ‘벼락감투’를 구경하고 오후에는 책상에 앉아 NOTE 정리에 골몰. 저녁에 DS에 있는 S miss와 약속을 포기하고 본점의 y와 같이 시민관에서 <안다루샤>를 관람하고 돌아와 DS에서 S에게 변명을 하고 11시경 SY와 같이 중국요리로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 DS에서 경음악으로 1시가 넘도록 감상에 잠긴다.’

하루의 일과가 복잡하기도 하다. 7월 일기가 시작하기 전 ‘이달의 메모’에서 7월에 본 영화를 정리해 두고 있는데, 모두 16편이다. 엄청난 영화광이 아닐 수 없다. 일기를 통독하고 나서 대단한 자료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치른 2만원의 값은 하는 것 같았다. 또 영화사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1950년대 젊은이의 영화보기도 시각에 따라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한다. 이 일기를 사들인 뒤로 혹 서점이나 고물 파는 곳을 들르면 일기가 있는가 하고 살피게 되었다. 어느 날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의 고물 파는 곳에서 살까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쉽기 짝이 없다.』

## 2. 위 칼럼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의 위 칼럼은 헌책방 골목을 자주 찾는 필자가 한 청년의 일기책을 우연히 구입하게 된 과정과 일기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필자(강명관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는 『일기책 안쪽에 ‘張大成 專用’(장대성 전용)이라고 써 놓았다』고 기술하고, 이를 근거로 일기를 쓴 사람이 장대성이고 나이는 스무 살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일기는 1956년 1월1일부터 10월16일까지의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필자는 이 일기에 대해 『따지고 보면 별로 신기할 것도 없는 일기』라면서도 『6·25전쟁 뒤 불안한 시대의 20대 초반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의 일상과 속내를 엿보기에 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친척과 친구들에 대한 친밀한 관계, 젊은 여성에 대한 치기 어린 애정, 일과 휴식 등을 그야말로 낱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대성의 집이 경상남도 진주 근처의 시골이며, 진주농림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고, 대입 시험에서 낙방 통보를 받고, 다시 동아대학교에 응시했다 또 낙방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입대를 기다리다 동아대학교 야간부 편입시험에 합격했으며, 주 활동무대는 미화당백화점이고, 취미는 영화 보기라는 등의 일기를 통해 얻은 장대성에 관한 정보를 세세하게 전하고 있다. 또한 7월 1일자 일기는 전문을 전재하고 있다.

칼럼에 소개된 장대성의 ‘일상과 속내’ 중에는 개인적인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장대성이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 할 자신의 일기 내용을 신문지면을 통해 공개하는 데 동의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칼럼에도 장대성의 동의를 받아 내용을 공개한다는 설명이 없다.

그렇다고 시간적으로나 내용으로 볼 때 일기 내용이 역사적 기록으로서 공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향신문은 위 칼럼에서 일기를 쓴 사람의 실명을 적시하고, 그의 이력을 자세히 서술하고, 일기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특정일의 일기 내용을 전문 그대로 전재했는데, 이는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 제12조 「사생활 보호」 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 3066 신문윤리강령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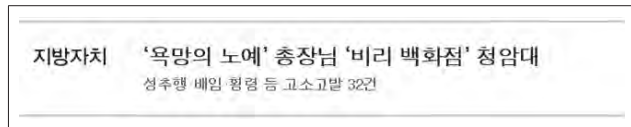
### 서울신문 발행인 이철 휘

#### 주문

서울신문(seoul.co.kr) 2015년 4월 21일자 「‘욕망의 노예’ 총장님 ‘비리 백화점’ 청암대」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캡처시각 2015.04.21 14:37〉

『전남 순천 청암대가 최근 10개월 새 32건의 고소 고발로 얼룩졌다.

문제의 발단은 강모(68) 총장이 여교수 한명을 마음에 두면서 시작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강 총장은 이 대학 설립자의 장남이다. 일본에서 살던 강 총장은 2011년 부친이 별세한 후 총장이 됐다.

강 총장은 2013년 7월쯤 향장피부미용과 A(45) 교수에게 은밀한 만남을 제의했다. 강 총장은 A 교수를 회식이 끝난 뒤 노래방에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로 A 교수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그러자 강 총장은 “앞으로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겠다”고 협박한 뒤 보복성 징계를 했다. 대학은 지난해 11월 A 교수와 친한 학과 교수 2명 등 3명을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했다.

이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징계 취소 처분을 받자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교수들이 재임용 탈락 취소 처분을 받은 지난 2월 25일에는 아무런 소명 절차 없이 곧바로 직위 해제했다. 교수들의 재임용권을 가지고 철저히 ‘갑

질'을 했다. 강 총장은 B(43·여) 교수로부터 성추행 고소도 당했다.

특히 수사기관의 봐주기식 조사가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순천지청은 A 교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강 총장이 내연 관계라고 주장하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광주고검이 공소 제기 명령을 내려 강 총장은 재판을 받게 됐다. B 교수 성추행 사건의 경우 경찰이 증인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지청은 다음달 초순까지 두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해 기소할 방침이다.

또 강 총장은 교비 14억원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조모(56·여) 교수는 수년 동안 교육비를 부풀려 상습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있다. 대학은 조 교수를 2년 동안 기획처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정책지원실장 등 4번이나 돌려 가며 직책을 맡겨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최정원 의원은 “대학이 학생들의 권익은 안중에도 없고 총장을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는 등 지역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총장을 포함해 모든 간부 교수들은 보직을 사임하고 학원 내외 인사를 포함한 거국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정상화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순천 최○○기자 c\*\*\*jp@seoul.co.kr

2015.04.21 11면』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최근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순천 청암대학교 총장이 여교수 성추행 사건 관련, 광주고검의 공소제기 명령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위 기사는 그러나 청암대학교 총장 강 모 씨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강 씨를 고소한 교수의 이름은 영문 이니셜 처리했지만, 나이와 소속 학과(향장피부미용과)는 명시해 최소한 지역 사회에는 그가 누구인지 신원을 짐작할 수 있게 보도하였다. 지난해 발생한 이 사건을 추적해온 다른 매체들은 이니셜로 처리



한 이름만 보도한 것과는 크게 비교된다.

또 청암대 홈페이지에서 향장피부미용과 교수명단을 검색하면 여교수 3명이 사진과 함께 소개되고 있는데, 서울신문의 이 보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교수들이 피해자로 오인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보도태도는 성추행 피해자일 수 있는 교수는 물론 다른 교수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더구나 교수 소개 페이지의 <상세보기> 난을 눌러보면 해당 교수의 학력과 이력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 그동안 보도된 내용과 대조하면 성추행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연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전자개인정보 무단검색 등 금지

2015-1298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 주문

경향신문 2015년 10월 22일자 1면 「'국정화 반대' 담임과 '교육부 관료' 학부 모 면담 ... 그 뒤/거리에 선 선생님, 잠 못드는 아버지」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20일 자신이 근무하는 세종시의 한 고교 앞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역사담당 교사 윤정하씨(왼쪽사진)와, 교육부 고위 관료 ㄱ씨가 윤씨와 자신의 아이 사이에 있었던 일화를 페이스북에 소개한 내용

『교육부 고위 관료 ㄱ씨는 21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하나 올렸다. 요즘 최대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였다.

교육부 고위 공무원인 자신과 역사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아이의 고등학교 담임선생, 아이 사이에 빚어진 상황을 담담한 어조로 적었다. 교육부는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주무 부처이고, ㄱ씨는 교과서 국정화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지만 그가 맡고 있는 업무와 무관한 것도 아니다.

ㄱ씨는 먼저 국정화 문제를 놓고 아이의 담임선생과 얽힌 짤막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그는 “작년 큰애가 세종시 고교로 전학한 후 담임선생님과의 면담에서 역사교사인 선생님이 내게 물었다”면서 대화 내용을 적었다.

“국정화 하실 건가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버님, 국정화 하게 되면 제가 혹시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 .. 괜히 힘만 드실 겁니다.”

ㄱ씨는 이어 “우리 아들이 오늘 카톡으로 그 선생님이 길가에 조용히 서서 1인 시위 하시는 사진을 보내왔다”고 했다.

“아빠 땀에 니 선생님이 고생하신다는 거구나.”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빠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

“... ..”

ㄱ씨는 “오늘은 피곤한데도 잠이 잘 안 온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라고 글을 맺었다.

ㄱ씨는 이날 오후 경향신문과 만나 “새벽 1시30분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가 선생님 사진을 보여주면서 1인 시위 하고 있다고 알려주더라”며 “철없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아빠 입장도 헤아릴 줄 알고, 선생님 생각도 할 줄 아는 게 기특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경향신문과 만난 이후 페이스북에서 해당 글을 삭제했다.

ㄱ씨의 글에 언급된 세종시 ㄴ고 역사교사 윤정하씨(31)는 “지난해 아이가 전학 온 이후 학부모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국정화를 하면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아이들이 국정화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20일 교육부가 아닌 학교 앞에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했다. 윤씨는 “혹시라도 이 일로 아이 아버지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은 교육부 고위 관료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이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고위 관료 ㄱ씨는 세종시내 한 고교에 다니는 아들로부터 학교 앞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1인 시위를 하는 담임선생의 사진을 카톡으로 받고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에 대한 소회를 올렸다. 그 담임 선생은 ㄱ씨가 지난해 아들이 세종시 고교로 전학

한 후 면담을 했던 역사교사였다. ㄱ씨는 당시 면담에서 국정교과서 문제로 대화를 나눴던 내용과 선생님에 대한 아들의 마음씀씀이를 대화 형태로 썼다.

경향신문은 ㄱ씨의 이 글을 이미지 사진으로 옮기고, 그 옆에 1인 시위를 하는 담임교사 사진을 실었다. 또 그 교사가 역사담당 윤정하 씨임을 밝혔다.

이처럼 기사는 교육부 고위관료의 아들을 익명처리 했지만 전학 온 시기와 아버지의 직업, 담임교사의 사진과 이름을 밝혀 주변 사람이라면 해당 학생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그 학생과 고위 관리가 ‘신상 털기’ 등의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 실제 기사에서 담임교사는 “혹시라도 이 일로 아이 아버지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걱정했다.

게다가 페이스북 페이지는 비록 타인과의 소통의 공간이면서도 사적인 공간이다. ㄱ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사적인 내용이다. 그는 국정화 담당도 아니고, 자신의 입장을 공표한 것도 아니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경향신문 기자를 만난 후 페이스북 글을 삭제했다. 공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위 기사는 보호되어야 할 아이와 그 아버지의 사생활을 공공연히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위 기사는 독자들로 하여금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 「사생활 보호」 ②(전자개인정보 무단검색 등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

2015-1154 신문윤리강령 위반

내일신문 발행인 장명국

### 주문

내일신문 2015년 5월 13일자 20면 「검찰, 홍준표 최측근 압수수색」 제목의 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내일신문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사진을 위 기사의 관련 사진으로 게재했다. 게재된 사진은 연합뉴스가 송고한 사진으로, 내일신문은 연합뉴스 크레딧을 달고 사진을 전제했다.

윤씨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공인도 아니다. 따라서 굳이 사진까지 게재하여 신분을 노출시키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 「사생활 보호」 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공인의 사생활 보도

2015-1104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일보 발행인 이종승

### 주문

한국일보 2015년 4월 21일자 3면 「성 전 회장, 자살 직전 김기춘 자택 인근서 배회한 흔적」 제목의 기사와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실세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뒷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목숨을 끊은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은 마지막까지도 몇몇 정권 실세들에게 구명을 요청했다고 한다. 성 전 회장 측근에 따르면 그는 특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접근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성 전 회장은 김 전 실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멀지 않은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갖은 의혹을 남겼다.

특히 본보가 20일 확인한 경찰의 무선 교신 기록상에는 성 전 회장이 9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김 전 실장의 자택 인근에서 배회한 흔적이 나타나 있다.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김 전 실장의 자택과 걸어서 10~15분 정도, 직선거리로 300m와 400m 떨어진 지점 등 두 곳에서 포착된 것이다. 성 전 회장이 자살한 시각으로 추정되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 전의 자취를 추정할 구

체적 근거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성 전 회장이 막판까지도 김 전 실장에게 구명을 요청하려 애썼다는 진술이 나오는 가운데, 자살 당일 김 전 실장과 통화나 만남을 시도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 성완중 전화, 김기춘 자택 10분 거리서 신호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경찰 무선 교신 녹취록’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9일 오전 평창동 K빌리지와 평창동 정토사 인근을 맴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K빌리지와 정토사는 김 전 실장의 자택(평창동 507-4)과 각기 400m와 300m씩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경찰은 당일 성 전 회장의 아들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으면서 끝자리가 각기 64\*\*, 30\*\*인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2대의 번호를 확보했다. 이어 통신사 기지국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 추적팀과 교신에 나서는데 64\*\*전화의 신호는 오전 9시 즈음 평창동 K빌리지 쪽에 머물렀다. 당시 종료서는 오전 9시 1분쯤 “64\*\*전화의 신호는 K빌리지 근처로 고정값이고 30\*\*전화는 평창동 260-17, 평창동 1872, 평창동 172-15(K빌리지)를 오간다”고 교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휴대전화 신호가 겹쳐 잡힌 곳은 K빌리지로 김 전 실장의 자택과는 차로 2~3분, 걸어서 10~15분 거리에 불과하다.(후략)』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국일보는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 4월 9일 목숨을 끊기 직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택 인근에서 배회한 흔적이 경찰의 무선 교신 기록상 나타나 있다고 보도하며 김 전 실장의 자택 주소와 사진을 공개했다.

기사는 『K빌리지와 정토사는 김 전 실장의 자택(평창동 507-4)과 각기 400m와 300m씩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며 김 전 실장의 자택 주소와 위치를 자세히 기술하고, 자택 전경과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사진 2컷 등 모두 3컷의 사진을 게재해 누구라도 김 전 실장의 자택을 알아볼 수 있게 했다.

비록 김 전 실장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10만 달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는 해도 자택의 지번을 공개하고 사진까지 게재하는 것은 김 전 실장은 물론 가족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 「사생활 보호」 전문, ④(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1153 신문윤리강령 위반

#### 내일신문 발행인 장명국

#### 주문

내일신문 2015년 5월 12일자 20면 「경찰, 옆집에 쪽지붙여 출석요구」 제목의 기사와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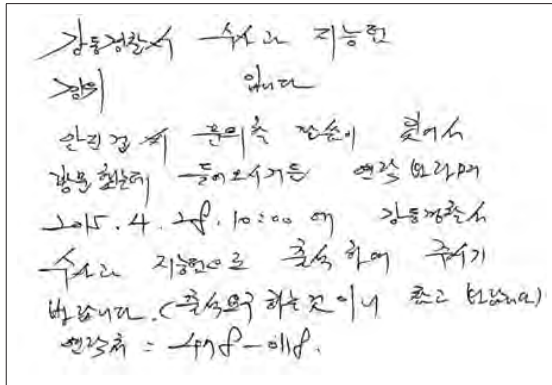
#### 이유

###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찰이 세월호추모 집회 참가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면서 정식 출석요구서가 아닌 쪽지로, 그것도 옆집 출입문에 붙여 논란이 일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4월 22일 서울 강동경찰서 모 경위가 작성한 '쪽지 출석요구'를 옆집 주인으로부터 건네받았다.



경찰이 세월호추모 집회 참가자의 집을 방문해 옆집 출입문에 붙이고 간 '쪽지' 출석요구서

쪽지(사진)에는 “강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위 ○○○입니다. 문의할 말씀이 있어서 방문했는데 들어오시거든 연락바라며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강동서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출석요구하는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연락처: ○○○-○○○”라고 적혀 있었다. 지난 4월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1주기 추모집회와 관련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으니 출두하라는 내용이었다. (후략)』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은 위 기사에서 경찰이 세월호추모 집회에 참가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에게 출석 요구를 하면서 정식 출석요구서가 아닌 쪽지를 옆집 출입문에 붙여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안 처장이 제공한 쪽지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기사는 쪽지에 ‘강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위 ○○○’ ‘연락처: ○○○-○○○’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담당 경찰관의 직위와 소속 부서를 공개했다. 사진에는 소속부서와 함께 ‘연락처: 478-0118’이라는 전화번호까지 드러나

있다. 기사와 사진을 본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위 기사는 경찰이 공적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해당 경찰관의 개인 정보까지 불필요하게 노출시키는 것은 『언론인은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 「사생활 보호」 ④(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1230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전 태 석

### 주문

일간스포츠 2015년 8월 6일자 2면 「“임태훈이 지금이라도 사과한다면 모든 일 잊겠다”/임신 그리고 낙태 … 연인서 고소인·피고소인으로 변한 두 사람」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임태훈(27)은 지난 6월 26일 임의 탈퇴선수가 됐다. 소속 구단이던 두산은 “선수 자신의 의사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며칠 뒤 임태훈은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야 했다.

#### ◇ 야구 커뮤니티에 낙태 관련 공개

여자친구 서 씨가 야구 커뮤니티에 임태훈과 얽힌 사연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전부터 안면이 있던 두 사람은 2014년 9월께 깊은 사이가 됐다. 첫 동침에

서 아이까지 생겼다. 이후 임태훈의 요구로 낙태를 했다. 낙태 뒤 서 씨는 임태훈이 자신 외에도 다른 여성들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임태훈의 가족은 서 씨에게 결별을 요구했다. 6개월 여 교제는 결국 서 씨가 임태훈의 치부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으로 끝났다.

두 사람은 현재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다. 임태훈은 7월 초 서 씨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서 씨는 7월 13일 송파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 씨의 변호인인 이정원 변호사는 “협박은 무혐의가 됐고, 명예훼손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서 씨는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 “허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 씨는 임태훈이 화장실에서 촬영한 사진까지 SNS에 올렸다. 이 변호사는 “명예훼손 처벌을 각오했다고 했다. 그만큼 배신감이 컸던 것”이라고 말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선 “임태훈이 낙태 뒤 서 씨에게 200만원을 줬다. 서 씨는 나중에 이 돈을 돌려줬다. 결별 과정에서 서 씨는 ‘200만원이 나와 헤어지는 비용이었느냐, 수천만원도 아니고 …’라는 말을 헛김에 했다. 그 말 때문에 고발됐지만 무혐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서 씨는 열렬한 야구팬이었다. 두산 연간회원권을 갖고 있으며, 야구심판학교에 다니기도 했다. 임태훈과는 교제를 시작하기 전 6년 동안 팬과 선수로 친분이 있었다. 이 변호사는 “서 씨는 처음 관계를 가진 뒤부터 임태훈이 결별을 요구하면 받아들일 생각도 있었다. 임태훈의 앞길을 가로막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린 선수의 갑작스런 구애에 쉽게 마음을 연 것도 처음부터 임태훈을 ‘스타 선수’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 대화의 문을 열지 않은 가족들

임태훈은 과거 여성 문제로 큰 곤욕을 치렀다. 상대방의 죽음으로 끝난 스캔들 이후 임태훈은 한 번도 제 기량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20대 청년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비난이었다.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구단에선 기량과 관계없이 그를 1군으로 올리기를 주저했다. 그런 그에게 임신을 한 서 씨의 존재는 부담이

었을 것이다.

임태훈의 임의탈퇴 소식이 전해진 뒤 야구 기자들 사이에선 “사귀던 여성이 은퇴를 요구했다더라”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두산 구단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서 씨가 구단 사람들에게 임태훈을 1군으로 올려달라고 조르기도 했다. 임태훈이 ‘외국에서 뭘까 …’라고 꾸짖하자 대만 프로야구에 대한 자료를 모아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임태훈 입장에서 서 씨가 구단과 접촉한다는 자체가 두려웠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나도 두산 팬으로서 안타깝다. 내가 임태훈의 에이전트였다면 솔직하게 사과하고 관계를 정리하라고 조언했을 것이다. 그러나 뒷일이 두려워 마음에도 없는 만남을 이어가다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는 있었다. 서 씨는 최근 임태훈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다. 임태훈의 부모는 서 씨를 ‘아들 인생을 망치려는 나쁜 여자’로 알고 있었다. 서 씨는 ‘성인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내게도 책임이 있다. 하지만 시시비비는 가리고 싶다’는 뜻을 전하려 했지만 가족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 ◇ 대중들의 비난 그리고 대인 기피증

하룻밤의 일은 두 사람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임태훈은 다시 한 번 대중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했다. 지금은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훈에게 전화로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다. 좋은 공을 던진 투수였고, 고교 시절부터 독서를 즐긴 똑똑한 선수였다.

서 씨는 이번 일이 정리되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생각이다. 좋아했던 야구는 아마 쓰린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 변호사는 “서 씨는 지금이라도 임태훈이 사과를 한다면 용서하고 모든 일을 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엘리트 야구 선수들은 피끓는 청춘기를 합숙 등으로 사실상 격리된 채 지낸다. 그래서 대인관계의 범위와 방식이 보통 사람들과 다소 다르다. 좋은 추억이었을 수도 있었을 만남은 오해와 불신이 쌓인 끝에 비극으로 끝났다. 지금 일본에서 뛰고 있는 이대호(소프트뱅크)는 롯데 시절 후배들에게 “팬과의 만남에

신중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일간스포츠는 1면과 2면, 그리고 3면 등 3개면을 할애해 전 두산 투수 임태훈의 고소사건,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 복귀 가능성 등을 대서특필했다. 3개면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임태훈은 지난 7월 여자 친구였던 서 모 씨를 경찰에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서 씨가 인터넷 야구 관련 사이트에 글을 올려 임태훈을 비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일간스포츠는 “서 씨의 변호사를 만나 (연인 사이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신분이 된) 사정을 들었다”고 1면에 보도했다.

이에 따라 문제의 위 기사는 서 씨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작성된 것이다. 2면 전체를 할애해 보도된 위 기사는 ‘임신과 낙태’에 관한 임태훈의 사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사는 『전부터 안면이 있던 두 사람은 2014년 9월께 깊은 사이가 됐다. 첫 동침에서 아이까지 생겼다.』면서 『이후 임태훈의 요구로 낙태를 했다.』고 보도했다.

첫 동침과 임신, 그리고 낙태는 지극히 사생활적인 영역이다. 내밀한 사생활은 아무리 임태훈이 공인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공익과도 무관하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는 당사자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수 있으며, 독자의 호기심에 편승한 선정정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또 위 기사는 서 씨의 일방적 주장만 신고 있다. 비록 기사는 1면에서 “임태훈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일단은 (서 씨 측의) ‘일방의 주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 기사 내용 대부분이 임태훈에겐 반론이 필요한 민감한 내용이다. 게다가 3개 면을 할애한 특집 기사이고, 고소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반론권 보장에 더 노력을 기울였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

(선정보도의 금지) ④(답변의 기회), 제11조 「명예와 신용 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 제12조 「사생활 보호」 ④(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1231 신문윤리강령 위반

###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백 석 기

#### 주문

아시아투데이 2015년 8월 11일자 12면 「권오준<포스코 회장>, 20억원대 호화아파트 구입에 13억 근저당」 기사와 제목, 관련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 이유

1. 아시아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20억원대 호화 아파트를 구입하며 10억원이 넘는 은행 빚을 진 것으로 확인됐다. 권 회장은 구매 당시 5억원이 넘는 49평 아파트와 8억원대의 상가점포를 이미 보유했다.

10일 포스코와 대법원에 따르면 권 회장은 2013년 3월 권 회장과 부인인 박충선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수는 공동명의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위치한 20억원 상당의 고가 호화 아파트인 센트레빌아스테리움용산 A동(11층)을 구입했다. 센트레빌아스테리움용산은 36층 규모로 권 회장이 거주하는 로얄층인 11층의 분양가는 19억원 수준이다.

당시 포스코 기술부분장(사장)을 맡고 있던 권 회장은 이 집을 구입하기 위해 포스코의 주거재 은행인 우리은행의 용산시티파크 지점에서 당시 근저당비율의 최대치인 120%를 적용해 13억524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 돈을 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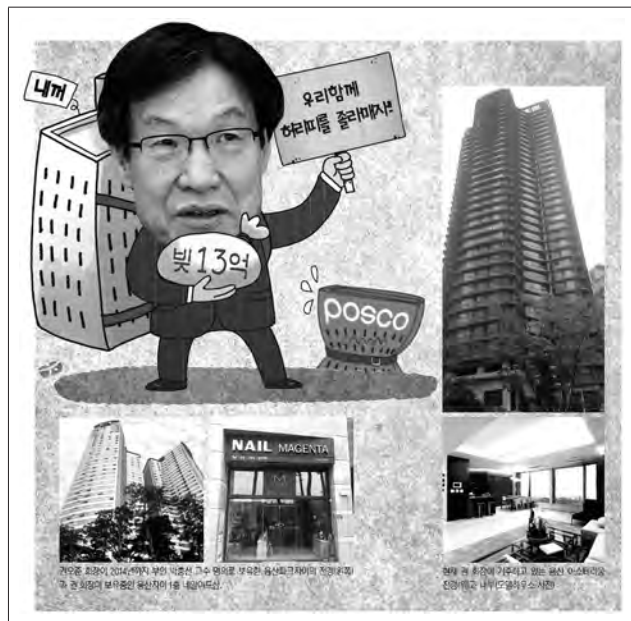
근저당이 13억원대인 것을 고려하면 권 회장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11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권회장이 갚아야 할 대출 이자는 많게는 연간 수천 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권 회장이 대출을 받을 당시 연 3%의 금리를 적용하고 5년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면 월평균 상환금은 1977만원 수준이다. 월평균 이자액은 143만원으로 총 이자는 8593만원이다. 대출기간을 10년으로 했을 경우, 월평균 상환금은 1062만원, 월평균 이자액 146만원, 총이자 1억7460만원이다.

현재 우리은행은 신용등급 1~3등급에 대해 연 3.2%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권 회장 개인적인 재산에 대해 회사차원에서 알 수 없다"며 "(센트레빌아스테리움용산은) 120% 정도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당시 대출비율안에 포함이 되니 문제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이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1km 떨어진 한강로1가에 49평대 주상복합아파트를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 권 회장의 부인인 박 교수는 2002년 한강로 1가에 위치한 용산파크자이 주상복합아파트 B동 18층(162.04㎡·49평)을 자신의 명의로 분양받았다.



박 교수는 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일인 2006년 3월 27일부터 한강로2가 아파트 구입 이후인 2014년 10월까지 8년 넘게 보유하고 있다가 12억1000만원에 매각했다.

이 주상복합아파트의 가격은 분양이 진행되던 2003년 기준으로 평당 1050만원 수준인 5억원대였다.

이와 함께 권 회장은 2009년 용산파크자이 B동 1층에 위치한 상가(50.37m<sup>2</sup>)를 자신의 명의로 7억8000만원에 구입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 상가는 지난해부터 네일숍이 입점해 영업을 하고 있다. 현재 시세는 9억원 수준으로 권 회장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75만원(부가세포함)에 임대를 해준 상태다.

권 회장의 연봉은 회장직을 맡은 지난해 10억9400만원이었지만 회장취임 이전에는 5억4900만원(2014년 1분기 보고서 기준) 수준이었다.

권 회장이 한강로1가의 용산파크자이의 상가를 구입한 2009년은 포스코건설도 120억원을 출자했던 서울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로 이 지역은 현재도 용산공원개발과 면세점 입점 등 부동산 호재가 남아 있어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는 곳이다.

한편 권 회장이 취임한 지난해 3월 이후 포스코는 지속적인 업황악화와 검찰의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 대우인터내셔널 항명 사태 등 그룹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권 회장은 투자사업의 부실화와 구조조정 지연, 비윤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그룹 쇄신을 위해 비핵심자산을 매각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는 한편 철강사업 중심의 사업재편 등을 통해 허리띠 졸라매기에 한창이다.

특히 지난달 15일에 열린 2분기 기업설명회에서는 그룹 경영쇄신을 위한 ‘혁신포스코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14개 부장급 조직을 포함한 88개 조직을 폐지하고 본사 및 제철소 스태프 부서를 중심으로 조직축소와 인력재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보고·회의문화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도 신경 쓰는 등 실질적인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투데이는 거의 전면을 할애한 위 기사에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취득 과정 등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기사 말미에는 검찰의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 등으로 포스코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권 회장은 그룹 쇄신을 위해 재무구조 개선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한창이라고 기술했다.

편집자는 작은 제목에 “비윤리 쇄신 평소 생각과 판이” 표현을 넣었다. 포스코가 어려움에 처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는데도 권 회장은 평소 생각과 전혀 다르게 빚을 얻어가며 개인 자산을 늘렸는데,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기사는 권 회장이 부인인 박충선 대구대학교 교수와 공동명의로 20억원대 호화 아파트를 구입했으며, 이를 위해 13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돈을 빌렸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권 회장이 대출받은 은행이 『포스코의 주거은행』임을 적시, 마치 대출 과정에서 모종의 역학관계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기사는 이어 『권 회장이 갚아야 할 대출 이자는 많게는 연간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대출기간을 5년으로 했을 경우와 10년으로 했을 경우를 나눠 권 회장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또는 이자까지 계산해 제시했다.

권 회장이 기사에서 ‘호화 아파트’로 문제 삼은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포스코 기술부문장(사장) 시절인 2013년 3월이다. 당시 소유하고 있던 49평 아파트는 2014년 10월에 매각했다. 새 아파트를 구입한 뒤 기존 아파트를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기사는 또 권 회장 소유의 상가점포에 대해서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75만원(부가세포함)에 임대를 해준 상태』이며 이 지역은 현재도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는 곳』이라고 기술했다. 권 회장의 상가 구입도 부동산 투기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권 회장이 2009년 구입한 상가는 당시 살던 아파트 1층에 위치한 것으로, 취득 가격은 7억8000만원이고 현 시세는 9억원 수준이다. 구입 6년 만에 1억

2000만원, 15% 정도 오른 시세다. 기사에 권 회장의 상가 구입 의도가 기술돼 있지는 않지만, 결과만 두고 본다면 부동산 투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권 회장의 2013년 당시 연봉은 5억4900만원이다. 권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 가액이 상류층 평균치보다 많다고 볼 수 있지만, 권 회장의 연봉 수준에 견줘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기업 경영실적과 경영인의 개인 재산 증식 여부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기사는 포스코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시점에 권 회장의 부동산 보유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시아투데이는 권 회장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했던 아파트 및 상가 사진 4컷과 권 회장 사진에 기사 내용을 함축해 만든 그래픽을 만들어 기사와 함께 게재했다.

권 회장은 대기업 경영자로 공인의 범주에 포함되긴 하지만 개인 재산을 공개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기사는 권 회장이 보유한 부동산과 부채 현황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보도했는데, 이는 권 회장과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위 기사와 제목은 권 회장에 대한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보도의 공정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제12조 「사생활 보호」 ④(공인의 사생활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